

변전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대비표

2015. 6. 12.

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팀

현행	개정 (안)	개정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9. 전문회사 작업팀 승급 및 자격연장</p> <p>9.3 승급 및 자격유효기간 연장 실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8.6항에 따라 관할 관리부서에서 시행한다.</p>	<p>9. 전문회사 작업팀 승급 및 자격연장</p> <p>9.3 승급 및 자격유효기간 연장 실사는 신청서 접수 후 3주 이내에 8.6항에 따라 인근 사업소에서 시행한다.</p> <p>인근 사업소는 서울↔경기북부, 강원↔충북, 남서울↔인천, 경기↔대전충남, 전북↔광주전남, 대구경북↔경남, 부산울산↔제주 지역본부간을 말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내부규제 개선 반영 ▪ 반부패 사규 및 제도개선 과제 반영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10.3 자격정지 및 취소(제재)</p> <p>[항목별 제재기준(최근 1년간 누계횟수 및 점수)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0 683 880 933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자격제한(정지)</th> <th rowspan="2">자격취소</th> </tr> <tr> <th>3개월</th> <th>6개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. 면허수첩에 기재된 기술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</td> <td>-</td> <td>1회</td> <td>2회</td> </tr> <tr> <td>9. 당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부조리로 인한 형사 입건 후 1심 유죄판결 경우</td> <td>-</td> <td>1회</td> <td>2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자격제한(정지)		자격취소	3개월	6개월	7. 면허수첩에 기재된 기술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	-	1회	2회	9. 당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부조리로 인한 형사 입건 후 1심 유죄판결 경우	-	1회	2회	<p>10.3 자격정지 및 취소(제재)</p> <p>[항목별 제재기준(최근 1년간 누계횟수 및 점수)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09 683 1693 962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자격제한(정지)</th> <th rowspan="2">자격취소</th> </tr> <tr> <th>3개월</th> <th>6개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. 면허수첩에 기재된 기술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(타사 기술인력이 투입된 경우 포함)</td> <td>-</td> <td>1회</td> <td>2회</td> </tr> <tr> <td>9. 당사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제공 및 전달에 대해 대내·외 조사결과 사실확인시(감사실, 기동감찰팀 및 대외 기관 등)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1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10.3.5 제재기준 7항의 타사 현장에 투입된 기술인력은 3개월간 전문회사 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다.</p>	구분	자격제한(정지)		자격취소	3개월	6개월	7. 면허수첩에 기재된 기술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(타사 기술인력이 투입된 경우 포함)	-	1회	2회	9. 당사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제공 및 전달에 대해 대내·외 조사결과 사실확인시(감사실, 기동감찰팀 및 대외 기관 등)	-	-	1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재기준 강화 ▪ 타사 현장 투입인력 제재 추가
구분		자격제한(정지)			자격취소																									
	3개월	6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면허수첩에 기재된 기술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	-	1회	2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당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부조리로 인한 형사 입건 후 1심 유죄판결 경우	-	1회	2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자격제한(정지)		자격취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개월	6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면허수첩에 기재된 기술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(타사 기술인력이 투입된 경우 포함)	-	1회	2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당사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제공 및 전달에 대해 대내·외 조사결과 사실확인시(감사실, 기동감찰팀 및 대외 기관 등)	-	-	1회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12.3 시공관리</p> <p>12.3.1 변전전문회사는 모든 공사의 시공에 있어 시공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적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의 책임이 있으며, 필수기술 및 필수(일반)기능인력은 시공관리책임자로 겸직 또는 선임할 수 없다.</p>	<p>12.3 시공관리</p> <p>12.3.1 변전전문회사는 모든 공사의 시공에 있어 시공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적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의 책임이 있으며, 필수기술 및 필수(일반)기능인력도 시공관리책임자로 겸직 또는 선임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기공사협회 건의 반영 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부칙 이 기준은 2015.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